

청주지방법원 2022. 6. 22 선고 2021가단3991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6. 8.

판 결 선 고 2022. 6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6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8. 28.부터 2022. 3. 12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성식

별지